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정 · 주의 요구

제 목 주거급여사업 집행잔액 미반납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내 용

울산광역시(○○○○과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 주거급여¹⁾ 및 주택수선 유지급여²⁾ 목적으로 ‘주거급여지원사업’에 대해 총 11,891,248,500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³⁾을 추진하였다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(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3개월)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,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.

1)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라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

2)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라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가 가구에게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보수로 구분)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

3) 총 사업비 13,507,453,500원(지방비 1,616,205,000원, 보조비율 국고 88.0%)

또한 2016년 ‘주거급여지원사업’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,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(○○○○과)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2016년도 ‘주거급여지원사업’ 국고보조금 11,891,248,500원⁴⁾ 중 2016. 12. 31.까지 11,288,230,470원을 집행하고 603,018,030원⁵⁾이 남았으므로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하는데도, 위 집행잔액 중 589,181,420원⁶⁾만 반납⁷⁾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3,836,610원은 2018. 3. 13. 감사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 반납하지 않았다.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시정] 주거급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,836,610원 상당을 국고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국고보조금 정산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4) 2016. 1. 7. 당초 교부 당시에는 12,824,000,000원 이었으나, 2016. 9. 19.(국토교통부 ○○○○기획과-0000) 국고보조금을 11,891,248,500원으로 변경

5) 2017. 4~5월 경 ○구로부터 반납금액이 잘못(47,007,100원→60,843,710, 13,836,610원 증가)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(내부망 쪽지) 총 반납금액을 당초 589,181,420원에서 603,018,03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 메일로 통보하였으나 동 사실이 정산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음

6) 울산광역시에서는 2017. 2. 16. 반납금액 589,181,420원으로 국토교통부에 ‘2016년도 주거급여사업 집행실적’을 제출하였고(○○○○과-2483), 이에 따라 2017. 4. 14. 국토교통부에서는 같은 금액을 반납금액으로 하는 ‘주거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결과 알림’을 울산광역시에 통보하였음(주거복지기획과-1845)

7) 2017. 7. 14. 담당자가 변경(○○○→○○○)되면서 현 담당자 ○○○는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의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통보받은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인 589,181,420원만 반납하였다고 주장